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신청시 본인의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 희망자께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전북지사(070-5161-6004, 063-902-6948)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1.22.(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전북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재임대
주택관리번호	2024-980013

■ (공급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청년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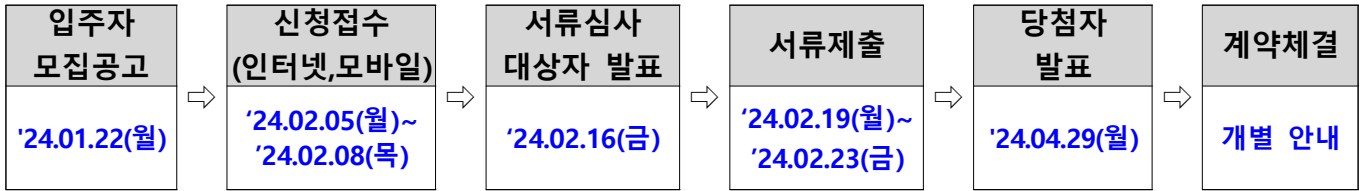
■ (1세대 1주택)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전환가능)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기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 확인 후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됨

# 1 모집일정 안내

## ■ 입주자 선정절차



■ 예비입주자 발표 이후 공급대상주택의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계약 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2 임대대상 단지

소재지				준공 시기	전용 면적 (㎡)	단지 규모 (세대수)	단지 최고 층수	주차장 출입구 높이	임대 호수	모집세대수		비고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당첨	예비	
전북	전주시	반월동	월드컵이지움	2015.3	59	210	24	2.3m	13	0	7	
전북	전주시	반월동	세움펠리피아	2016.2	59	211	27	2.3m	14	0	10	
전북	전주시	덕진동	영무예다음	2009.12	59	601	12	2.3m	27	0	13	
전북	정읍시	상동	대광로제비앙	2014.11	59	450	15	2.3m	11	0	6	
전북	정읍시	수성동	뉴캐슬	2016.07	59	170	15	2.3m	1	0	3	
전북	군산시	수송동	수송오투그란데2차	2011.03	59	570	20	2.3m	17	0	13	

■ 동호수 등 개별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소재지				전용 (㎡)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합계	계약금	잔금	
전북	전주	반월동	월드컵이지움	59	87,000,000	8,700,000	78,300,000	126,000
					89,000,000	8,900,000	80,100,000	140,000
		반월동	세움펠리피아	59	88,500,000	8,850,000	79,650,000	135,000
					90,000,000	9,000,000	81,000,000	218,000
	정읍	상동	대광로제비앙	59	92,000,000	9,200,000	82,800,000	240,000
					76,000,000	7,600,000	68,400,000	146,000
		수성동	뉴캐슬	59	81,000,000	8,100,000	72,900,000	141,000
					72,500,000	7,250,000	65,250,000	66,000
군산	수송동	수송오투그란데2차	59	85,000,000	8,500,000	76,500,000	191,000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임대조건	<p><b>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li> <li>-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li> </ul> <p>*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p>
기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미 실시

-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2)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세부 자격 요건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예비신혼부부	<p>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p> <p>※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p>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청년 ① 또는 ②	<p>①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01.23. ~ 2005.01.22.)</p> <hr/> <p>②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p>
일반인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b>외국인 배우자</b>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b>외국인 직계 존·비속</b>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b>태아</b>	세대구성원의 태아 (단, 태아는 세대원수에만 포함. 자격검증대상 아님)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교내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등은 제외
  -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내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대학생)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 3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소득·자산 기준**

구분		소득 기준				
소득		<input type="checkbox"/> <b>소득기준 금액(금액단위: 원)</b>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를 말함)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퍼센트 이하]				
		<b>가구원수</b>	<b>청년 및 신혼부부</b>		<b>맞벌이 신혼부부</b>	
			<b>월평균소득금액</b>	<b>기준</b>	<b>월평균소득금액</b>	<b>기준</b>
		1인	4,024,660원 이하	120%	-	-
		2인	5,505,913원 이하	110%	6,506,988원 이하	130%
		3인	6,718,198원 이하	100%	8,061,838원 이하	120%
		4인	7,622,056원 이하	100%	9,146,467원 이하	120%
		5인	8,040,492원 이하	100%	9,648,590원 이하	120%
		6인	8,701,639원 이하	100%	10,441,967원 이하	120%
		7인	9,362,786원 이하	100%	11,235,343원 이하	120%
	8인	10,023,933 이하	100%	12,028,719원 이하	120%	
		*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 =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가구원수는 <b>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b> 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b>해당세대(세대구성원)</b> 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제14조의3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하여 적용				
자산	<b>부동산 가액</b>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이 21,550만원 이하				
	<b>자동차 가액</b>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주택소유여부의 자세한 판정기준은 공고문 하단 참조				

■ 입주자 선정기준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청년 및 대학생
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1순위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6호의 배점을 합산하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
	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3점
	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점
②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공급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납입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④ 신청인의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3년 미만	1점
⑤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 자	2점
⑥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적용하지 아니함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2순위, 3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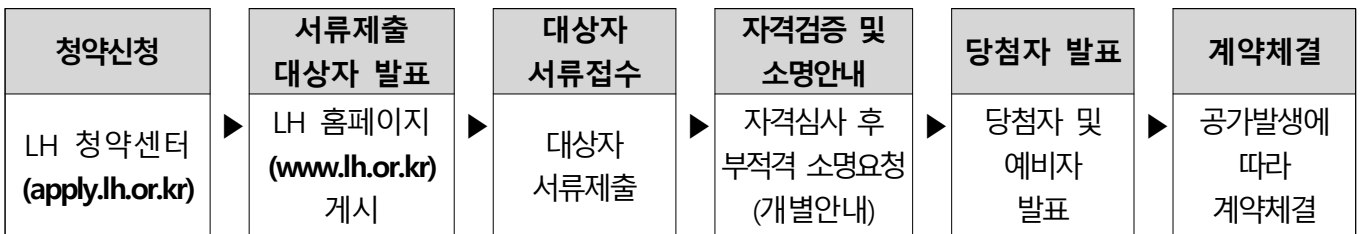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청약 신청은 받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및 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24.02.05(월) 10:00~ '24.02.08(목) 18:00	'24.02.16(금) (16:00이후)	'24.02.19(월)~ '24.02.23(금) (등기우편)	'24.04.29(월) (16:00이후)	개별안내

- \* 청약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받으며(인터넷 청약 - 주거복지), 청약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 서류심사 대상자는 '24.02.16(금) 16:00이후 발표되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24.02.19(월)~'24.02.23(금) (등기우편 접수)]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
- \*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하고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전북지사(070-5161-6004 / 063-902-6948)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선정절차



###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방법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또는  
청약센터 앱 설치·실행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그인 → 청약신청 클릭

#### ①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구)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구)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청약센터 어플 실행

#### ③ 신청하기 (모바일 화면은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을 확인하시어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은 '24.02.05.(월) 10:00부터 '24.02.08.(목) 18:00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증빙을 위한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신청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신청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신청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신청한 것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신청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신청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4.02.16)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요구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셔야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청년신혼 리츠사업지원단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6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01.2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 123456-1234567).

### ■ 제출방법 : 등기우편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 제출장소 :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29-15, 휴본빌딩 6층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전북지사

### ■ 제출서류의 종류 (각 1통씩 제출)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필수	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li>· 동의방법 : 동의서 서명란에 대상자 전원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li> <li>※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li> </ul>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li> </ul>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li> </ul>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필수	추가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주민센터
	○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모두 해당) * 한부모가족은 필수 제출	
	○	임신진단서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의료기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차상위 계층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	청약저축순위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1부 *발급기준일: 2024.01.22.(발급관리번호: 2024-980013) 청약접수마감일까지 발급가능 *청약가입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접속 ( <a href="http://www.applyhome.or.kr">www.applyhome.or.kr</a> )에서 인터넷발급	청약가입은행 한국감정원
	○	배우자 소득관련 증빙서류 (맞벌이부부만 해당)	· 취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등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 영위 및 「소득법」에 따라 사업소득 신고(세무서 발급) ※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형태로 근무 중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와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신고한 소득이 없어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세무서등
	○	장애인등록증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주민센터

구분 필수   추가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발급처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세대구성 확인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공동신청 확인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세대구성 확인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대표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예비배우자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 (※전부사항증명 서로 발급)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입주일 전일까지 미제출시 입주 불가하며, <b>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b> 처리됨	
가족관계증명서	입주 전까지 제출 (※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대리인 방문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추가 확인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서류제출대상자는 추첨에 따라서 모집세대수의 통상 2~3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전북지사(070-5161-60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  
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 임대차계약 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리츠를 예금주로 한 계좌에 계약금이체, 현장수납 불가)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 시 서명날인 불가)	
	④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 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8 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방법

■ 신청자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2.)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금액은 당사자의 소득 및 자산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2.)에 산정한 것으로 봅니다.

###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위 소득조사 항목표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근로복지공단 자료→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자산 보유액 산정 기준

- 자산 보유액 조사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b>공시가격</b>(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li> </ul>				
		구분		가액산정 기준		
		주거용건물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비주거용건물	공장, 상가 (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b>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b>(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li> </ul> </li> <li>•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부적격 소명

- 주택소유여부,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접수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10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자 범위 : 세대구성원 전체(“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체)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관련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 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11 유의사항

갱신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주택소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퇴거하셔야 합니다.</li> <li>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단, 소득기준은 검색 하지 않으며, 자산기준(부동산, 자동차)은 보유기준 등을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li>이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만료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합니다.)</li> </ul>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공급신청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li> <li>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중복입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li> </ul>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li> <li>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소유여부,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ul>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본 공고 내용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및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전북지사 ☎ 070-5161-6004 / 063-902-69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LH 및 공단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공사 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 및 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http://www.kohom.or.kr))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1. 22.

**(주)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동·호	임대 호수	모집세대수	
						당첨	예비
전북	전주시	반월동	월드컵이지움	101동 301호 101동 601호 101동 704호 101동 1004호 101동 1202호 102동 2102호 103동 301호 103동 501호 104동 1002호 104동 1602호 104동 1802호 105동 101호 105동 501호	13	0	7
전북	전주시	반월동	세움펠리피아	1동 303호 1동 401호 1동 407호 1동 503호 1동 1006호 1동 1207호 1동 1401호 1동 1503호 1동 1809호 1동 1909호 1동 2008호 1동 2009호 1동 2207호 1동 2509호	14	0	10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동·호	임대 호수	모집세대수	
						당첨	예비
전북	전주시	덕진동	하가영무예다음	101동 302호 101동 604호 101동 1103호 102동 102호 103동 101호 104동 305호 104동 501호 104동 904호 105동 603호 105동 606호 105동 802호 106동 602호 106동 902호 106동 1202호 107동 304호 107동 305호 108동 1102호 109동 404호 110동 103호 110동 301호 110동 404호 110동 504호 110동 505호 110동 704호 110동 1102호 111동 901호 111동 1201호	27	0	13
전북	정읍시	상동	대광로제비앙	103동 103호 103동 604호 103동 703호 103동 802호 103동 1202호 106동 405호 106동 503호 106동 504호 106동 804호 106동 1403호 106동 1502호	11	0	6
전북	정읍시	수성동	뉴캐슬	101동 1208호	1	0	3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동·호	임대 호수	모집세대수	
						당첨	예비
전북	군산시	수송동	수송오투그란데2차	702동 304호 702동 403호 702동 504호 703동 204호 705동 501호 705동 806호 705동 1002호 705동 1306호 705동 2002호 706동 101호 706동 106호 707동 701호 706동 1001호 707동 1002호 707동 1301호 707동 705호 708동 501호	17	0	1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인 (주)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총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납세에계한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문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약관, 부속서류, 입주자저축계좌번호 등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생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예비신혼부부만 제출] 공동신청 확인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아파트)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연락처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 신청	<input type="checkbox"/>	상기 신청인 (1), (2)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 정보	<input type="checkbox"/>	상기 신청인 (1), (2)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input type="checkbox"/>	상기 신청인 (1), (2)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 (주)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 [예비신혼부부만 제출] 세대구성 확인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아파트)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	
배우자		-	
		-	
		-	
		-	

20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주)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